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. 11. 10(화)

남산 케이블카 독점 해소를 이행 중이며, 시행령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< 보도내용 요약 >

□ 2026.11.10.(화) 매일신문 「오세훈 “국토부가 남산케이블카 60년 독점 질타 李대통령 거짓말쟁이로 만들어”」, 2026.11.8.(일) 뉴스1 「오세훈 “국토부, 남산곤돌라를 주택공급 협상 카드로 활용”」 등 관련입니다.

○ 이 기사는 남산 케이블카를 60년 넘게 한 사업자가 독점해 왔고,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기한('27.9.18.)까지 대체수단(남산곤돌라)이 없으면 서울시가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,

○ 국토교통부가 남산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미루는 것은 케이블카 독점 연장을 돕거나 주택공급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서울시장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.

< 국토부 입장 >

□ 그동안 일부 궤도시설은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절차가 없어, 특정 사업자가 수십 년간 사실상 무기한으로 독점 운영해 왔습니다. 국공유지 등 국민 모두의 자산을 기반으로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공기여는 토지 사용료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.

○ 또한, 경쟁이 없는 구조로 인해 서비스와 시설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여 높은 이용금액, 장시간 대기, 편의시설 부족, 교통약자 접근성 미흡 등 이용객 불편이 장기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.

○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, 허가를 재검토하거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제도적 수단이 없어 지방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·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

○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정 궤도사업자의 무기한 독점 운영을 해소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「궤도운송법령」 개정을 완료('26.9.18. 시행)하여,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장기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한편,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(현행 12m)은 특정 지역·사업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.

○ '25.6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방재시설과 궤도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, 개정될 경우 남산뿐 아니라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므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.

○ 입법예고 당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, 현재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

○ (반대) 종교계·환경단체 등은 남산 생태계 훼손 우려와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, 사업 백지화 및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

○ (찬성) 장애인단체, 공원녹지 관련 협의회 등은 시민 접근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이유로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.

○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관련 소송이 1심('25.12)과 2심('26.9) 패소 후 대법원 상고('26.10) 중인 만큼, 소송 결과와 여론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책임자	과 장	이두희 (044-201-3742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현 (044-201-4085)
담당 부서	철도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상욱 (044-201-4623)
		담당자	사무관	배재익 (044-201-488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